

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(제44조제2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1차 처분은 처음 위반행위가 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, 2차 처분은 1차 처분 시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한 기간 내에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았을 때의 처분을 말하며, 3차 처분은 2차 처분 시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한 기간 내에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았을 때의 처분을 말한다.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처 분 기 준		
		1차 처분	2차 처분	3차 처분
가. 부정한 방법으로 이법에 따른 허가·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	법 제31조 제1항제1호	허가·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		
나.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(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)	법 제31조 제1항제2호	공사 중지	허가·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	
다. 법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할 때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31조 제1항제3호	조 건 이 행 등 지정명령	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중지·변경,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·변경·이전	허가·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

라.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토지 등의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	법 제31조 제1항제4호	시정명령	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중지·변경	허가·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
마.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	법 제31조 제1항제5호	시정명령	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중지·변경	허가·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
바.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	법 제31조 제1항제6호	시정명령	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중지·변경	허가·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
사.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한 경우	법 제31조 제1항제7호	시정명령	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중지·변경	허가·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
아.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	법 제31조 제1항제8호	준공검사이행명령	건축물·시설물 등의 사용금지·사용제한	허가·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
자.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의 신고나 허가 없이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경우	법 제31조 제1항제9호	신고·허가이행명령	건축물·시설물 등의 사용금지·사용제한	허가·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
차.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1조 제1항제10호	통지이행명령	건축물·시설물 등의 사용금지·사용제한	허가·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